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특례)”를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1조의2 제4항에 따른 연간 점용료 산정 방식은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철도시설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의제2항에 따라 산출한다.
2. 요율은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요율이 1천분의 10보다 작은 부지에 대해서는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3. 점용료 산정시 철도시설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사 용료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u><신 설></u>	제16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사 용료 등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조의2 제4항에 따른 연간 점용료 산정 방식은 「철 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를 준 용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철도시설 가액은 「국유재산 법 시행령」 제29조의제2항에 따라 산출한다. 2. 요율은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요율이 1천분 의 10보다 작은 부지에 대해 서는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3. 점용료 산정시 철도시설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5261